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9. 23.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

1. 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을 결정(신설)하는 사항임.

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87번지 일원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위치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	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신설	-	무의동 87 일원	소로	2	38	8	국지 도로	522	소로 1-12	소로 1-12	일반 도로	-	-	

-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	변경내용	변경사유
	변경전	변경후		
-	-	소2-38	○ 도로 신설	○ 회차 및 우회로 확보를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하고자 함.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